

# 「평창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9월 27일, 이창열 의원 발의
- 회부일자: 2023년 10월 11일 회부
- 상정일자: 제28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2023년 10월 11일 상정·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이창열 의원)

#### 가. 제안이유

노후 공동주택이 증가함에 따라 체계적이고 형평성 있는 지원을 위하여  
공동주택 지원 대상 적용 범위와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1) 법령 오기 정정(안 제2조, 안 제16조)
- 2) 적용 범위 확대 및 적용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안 제3조)
  - 세대 제한 기준 삭제, 건물 노후 기준시점 명시(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
- 3) 지원범위(보조금 지원 비율) 확대(안 제5조)
  - 필요한 경비에서 50% 이하 지원 ⇨ 60% 이하 지원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영옥)

○ 본 조례안은

관내 노후 공동주택이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유지·관리를 위한 체계적이고 형평성 있는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으로는,

적용범위를 기존 “15세대 이상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에서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으로 변경하여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노후 기준을 명확히 하였으며,

지원 규모(보조금 지원 비율)를 필요한 경비의 “50퍼센트”에서 “60퍼센트”로 확대하여 주민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함.

○ 검토결과,

공동주택법 제85조에서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하였으며, 수권 범위 안에서 규정되었으므로,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4. 질의 및 답변 요지: 「생략」

### 5. 토론 요지: 「없음」

### 6. 심사 결과: 「원안가결」

###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 8. 기타 사항: 「없음」